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디지털융합심사국 및 디지털융합심사국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특허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허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6호 중 “특허정보”를 “산업재산 정보”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제공

제13조제3항제1호 중 “산업재산권”을 “산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산업재산권”을 “산업재산”으로, “운영”을 “운영 및 연구·개선”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을 각각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재산권의”를 “산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재산권 관련”을 “산업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제15호·제16호·제18호 및 제23호 중 “산업재산권”을 각각 “산업재산”으로 한다.

1의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1의4.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4의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정

5.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관리

6의2.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활용 시스템 구축·운영 및 인프라 구축

제17조제3항제1호 중 “차세대에너지, 고분자섬유, 의료 및 환경”을 “이차전지소재, 고분자섬유, 의료, 환경, 이차전지설계 및 이차전지제어관리”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제12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 제13조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1호의4,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제5호·제6호·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제15호·제16호·제18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4조제1항 관련)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부정경쟁행위,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	5명
2. 특허 심사업무	14명
3.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9명
4. 특허 심사업무	13명
5. 특허 심사업무	7명
6.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5명
7. 특허 심사업무	4명
8.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3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산업재산정책국) ① · 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5. (생 략) 6. <u>특허정보</u> 를 활용한 국가연구 개발의 지원 7. ~ 16. (생 략)	제11조(산업재산정책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u>산업재산 정보</u> ----- ----- 7. ~ 16. (현행과 같음)
제12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 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 4. (생 략) <u><신 설></u> 5. ~ 15. (생 략)	제12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 한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 · 제공</u> 5. ~ 15. (현행과 같음)
제13조(산업재산정보국) ① · 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u>산업재산권</u> 정보화 정책의 수립 · 총괄 및 조정	제13조(산업재산정보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산업재산</u> ----- -----

1의2.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신 설>

<신 설>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연구·보안·유지 및
관리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외주용역의 관리
와 전산장비시설의 도입·운
영·유지 및 관리

4. 산업재산권의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 통신망의 구축·유지
및 관리

<신 설>

5. 산업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
스의 구축·관리

6.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유
통 및 서비스 체계의 구축·

1의2. 산업재산 -----
----- 운영 및 연구·
개선

1의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시행

1의4. 산업재산 분류정보와 다
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

--

3.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

4. 산업재산 -----

4의2.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
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의 수립·조정

5.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
의 구축·운영 및 관리

6. 산업재산 -----

운영

<신 설>

7. 산업재산권 공보 및 특허청
연보의 발간·배포
8.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교환·분류 및
보관
9. 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0.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11. 산업재산권 수수료 관련 업
무의 총괄·조정
12. (생략)
13.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
안내
14. (생략)
15.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제
도의 개선 및 관리
16.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의
방식심사에 관한 사무
17. (생략)
18.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

--

6의2. 산업재산 정보의 분석·
활용 시스템 구축·운영 및
인프라 구축

7. 산업재산 -----

8. 산업재산-----

--
9. 산업재산 -----

10. 산업재산 -----

--
11. 산업재산 -----

12. (현행과 같음)
13. 산업재산-----
--
14. (현행과 같음)
15. 산업재산 -----

16. 산업재산 -----

17. (현행과 같음)
18. 산업재산 -----

제협력에 관한 사항 19. ~ 22. (생 략) 23. 그 밖에 <u>산업재산권</u> 정보화 및 고객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화학생명심사국) ①·② (생 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1. 화학·생명기술(유기화학, 약 품화학, 기초재료화학, <u>차세대</u> <u>에너지</u>, <u>고분자섬유</u>, <u>의료</u> 및 <u>환경</u>)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 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2. (생 략)	----- 19. ~ 22. (현행과 같음) 23. ----- <u>산업재산</u> ----- ----- 제17조(화학생명심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u>이차전</u> <u>지소재</u>, <u>고분자섬유</u>, <u>의료</u>, <u>환</u> <u>경</u>, <u>이차전지설계</u> 및 <u>이차전지</u> <u>제어관리</u>----- 2.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3